등촌 두산위브 주상복합 아파트(서울) 입주자모집공고

등촌 두산 We've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9.07.26. 입니다.(무주택기간, 나이, 지역 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

– 인터넷 청약 가능 시간(아파트투유 www.apt2you.com 08:00~17:30) –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청약 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 위탁자 세림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수탁자 대한토지신탁(주)가 체결한 신탁계약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18년 3월 28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 본 아파트의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강서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아파트입니다.

– 과밀억제권역 : 서울시 · 인천(일부) · 경기도 의정부시 · 구리시 · 남양주(일부) · 하남시 · 고양시 · 수원시 · 성남시 · 안양시 · 부천시 · 광명시 · 과천시 · 의왕시 · 군포시 ·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제외] – 투기과열지구 : 서울시 · 경기도

– 청약과열지역 : 서울시 · 경기도 과천시 · 성남시 · 광명시 · 구리시 · 안양시 동안구 / 하남시 · 고양시 · 남양주시 · 화성시(동탄2) · 광교택지 개발지구 내 – 공공택지 ·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수원시 팔달구용인시 수지구기흥구 / 부산 해운대구 · 동래구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9조, 제25조에 의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 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재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거주한 신청자가 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신설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2에 따라 주택공급 대상에 포함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요건(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 · 시행되어 제23조 제2항 제7호에 의해 제4조 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니라 기타 지역 거주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85㎡이하 주택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도'가 적용됩니다.

– 주택형 전용85㎡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입주자로 선정하며, 전용85㎡초과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나머지 50%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함. (단, 본 주택은 공급세대가 85㎡이하로 가점제 100% 적용)

– 청약 1순위 자격제한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 지역 해당),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2순위 청약 가능) – 청약 1순위 접수 시 무주택자(세대주)는 가점제 방식, 1주택을 소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선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종류별로 입주자를 선정 ② ①번에서 입주자 선정 후 남은 세대가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번 선정 후에도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로 전환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의 예비입주자 선정 방식은 추첨제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6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 · 호수 배정일(당첨일)이

⊙ 중복 청약접수 관련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타주택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중복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당첨자발표일이 서로 다른 주택에 각각 청약하여 모두 당첨이 되면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주택의 당첨만을 인정합니다.

– 청약자(세대주)와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동일 공급유형으로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타주택 포함)에 각각 청약(특별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일반공급)하여 모두 당첨되는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아파트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의 재당첨 제한기간 규정이 적용되며, 기분양주택 당첨여부에 따라 본 아파트의 청약이 제한되오니, 아래 사항을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 지역 해당),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2순위로 청약 가능)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 "과거 5년 이내의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자

–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및 지역(직장 포함) 주택조합의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3호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및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지역(직장) 주택조합의 조합 불가/현금청산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사업계획승인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입주권을 취득한 자는 제외)

– 재당첨 제한(특별공급 및 2순위 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아파트 바랍니다. (단,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각호(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제7호 가목 및 같은 항 제8호)의 주택, 제47조 이전기관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

– 재당첨 제한 기간 : 과밀억제권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5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3년,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3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1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7호 가목의 주택(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 청약 제한 사항(과거 당첨 사실 등) 조회 방법 : 본 주택에 청약신청 전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따라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 서비스(www.apt2you.com) 또는 KB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당첨 사실 조

– 모든 지역 2순위 접수방법 변경 : 청약 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사용으로 변경되어,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예금, 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가점제 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또한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 군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입주자 저축 1년 이상 가입자 →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청약 1순위 신청 시 입주자 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만 수도권 거주자로 신청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기타지역)로 봅니다.

⊙ 분양권 전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에 의거 최초로 주택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 (5년을 초과하는 경우 5년으로 한다)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 「주택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투기과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 청약신청하시기 바람) – 제1호 :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 제2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 제3호 :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최하층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

⊙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동안에 체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참고하

⊙ 부적격 당첨자(계약자)의 당첨(계약)취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 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 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 ·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상속, 증여,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부칙 제3조)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1. 분양권등 취득에 따라 주택 소유자가 되는 날

– 권리구분란에서 "공급계약–준공전–분양권(입주권)"인 경우 계약일.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권 등으로 보지 아니함

가.시행일(2018.12.11.)전 공급계약된 건 나.시행일 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된 건 다.시행일 전 사업계획승인(지역주택조합) 신청된 건 라.시행일 전 관리처분계획승인(정비사업) 신청된 건

– 권리구분란에서 "전매–준공전–분양권(입주권)"인 경우 잔금지급일: "공급계약–준공후–분양권(입주권)", "전매–준공후–분양권(입주권)"의 경우 주택으로 등기되므로 엑셀검색결과상 동일물건이 있는 경우 1주택으로 처리됨.

2. 분양권등 처분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지 않게 되는 날

– 권리구분란에서 "전매–준공전–분양권(입주권)"인 경우 잔금지급일 –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검색되어 나타났으나 증여, 경매, 공매 등으로 처분된 경우 당사자가 소유했던 공급계약서에서 다른 사람에게 명도된 날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 · 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공급질서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

– 서울특별시 강서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매매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 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 외 자세한 사항은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일정, 청약 신청방법 및 장소, 당첨자 발표일, 지정계약기간 안내

구 분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1순위 당해(서울 1년이상 거주)	1순위 기타(서울 1년미만/경기/인천)
일 정	08월 05일(월)	08월 06일(화)	08월 07일(수)
방 법	인터넷 청약(08:00 ~ 17:30)	인터넷 청약(08:00 ~ 17:30)	인터넷 청약(08:00 ~ 17:30)
장 소	•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PC에서만 가능	• 금융결제원 (국민은행외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apt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 (10:00 ~ 14:00, 특별공급 신청 해당 접수서류 지참 시 가능, 은행창구접수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 · 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시 강서구청 주택과 – 26338호(2019.07.25.)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656-35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최고 20층 4개동 총 156세대 중 일반공급 88세대, 특별공급 68세대[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16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6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31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5세대 포함] 및

■ 공급대상

주택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전용면적기준)	타입(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소계	기타 공용면적(지하주차장등)
민영주택	2019-000661	01	31.1700	31	31.1700	10.9933	42.1633	21.2987
		02	50.0900	50	50.0900	15.6836	65.7736	34.2267
		03	59.9800	59	59.9800	18.6460	78.6260	40.9846
		04	64.4600	64	64.4600	18.2931	82.7531	44.0458
		05	84.7400	84	84.7400	20.5006	105.2406	57.9032
	합계							

※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대지지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타입	공급세대수	동별 라인별	층 구분	세대수	공급금액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금(20%) 1차 계약시	2차 계약후 30일
31.1700	19	104동 2호	2층	1	151,016,000	143,084,000	294,100,000	29,410,000	29,410,000
			3층	1	155,227,000	147,073,000	302,300,000	30,230,000	30,230,000
			4층	1	159,437,000	151,063,000	310,500,000	31,050,000	31,050,000
			5층	1	163,596,000	155,004,000	318,600,000	31,860,000	31,860,000
			6층 이상	15	167,807,000	158,993,000	326,800,000	32,680,000	32,680,000
50.0900	38	104동 1,3호	2층	2	235,587,000	223,213,000	458,800,000	45,880,000	45,880,000
			3층	2	242,160,000	229,440,000	471,600,000	47,160,000	47,160,000
			4층	2	248,681,000	235,619,000	484,300,000	48,430,000	48,430,000
			5층	2	255,254,000	241,846,000	497,100,000	49,710,000	49,710,000
			6층 이상	30	261,775,000	248,025,000	509,800,000	50,980,000	50,980,000
59.9800	81	101동 1,2호	2층	4	281,647,000	266,853,000	548,500,000	54,850,000	54,850,000
			3층	5	289,452,000	274,248,000	563,700,000	56,370,000	56,370,000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①해당직장 ②해당직장/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①, ②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①, ②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②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신규사업자	①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법인등기부등본	①세무서 ②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①세무서,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② 상기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영수증(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①해당직장 ②국민연금공단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각서(견본주택에 비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접수장소

■ 일반공급 청약 방법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함.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람.

구분	신청대상자	거주구분	신청접수일	신청방법
일반공급	1순위 (당해)	서울특별시 1년 이상 거주자	2019년 08월 06일(화요일) 08:00~17:30	• 인터넷 청약 •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서비스(KB국민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 청약통장가입자) PC(www.apt2you.com) / 모바일(APT2you앱) • KB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혹은 모바일뱅킹 ※주택청약 참가은행(15개) : 기업, KB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 하나은행, 신한은행 ※아래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순위 (기타)	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자 /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019년 08월 07일(수요일) 08:00~17:30	
	2순위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019년 08월 08일(목요일) 08:00~17:30	

※ 1순위 청약일정 분리에 따른 청약 시 유의사항

(1) 서울특별시 1년 이상 거주자는 1순위 "당해지역" 접수일에만 청약가능하며, "기타지역" 접수일에는 청약 불가 (위반 시 부적격 처리)

(2) 서울특별시 1년 미만,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는 1순위 "기타지역" 접수일에만 청약가능하며, "당해지역" 접수일에는 청약 불가 (위반 시 부적격 처리) → ※1순위(당해)지역 청약마감 시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3)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다른 주택의 청약신청 및 당첨이 불가함.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금융결제원(全 은행 청약자_국민은행 제외)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KB국민은행(KB국민은행 청약자) – 일반공급만 해당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일반공급 스마트폰 청약시] APT2you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아파트투유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일반공급 PC 청약시]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특화서비스 「주택청약」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일반공급 스마트폰 청약시] KB스타뱅킹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KB스타뱅킹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전체메뉴 – 청약/채권 – 신청 」⇒「주택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청약자격(거주 개시일) 기재방법 : 거주개시일(KB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 · 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단위)의 전입일을 기재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고령자, 장애인, 인터넷 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비사항
일반공급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 · 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그 외 구비사항은 생략
	제3자 대리 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 · 호수 결정

59	기본(실내기 2대)	거실/주방 + 침실1	3,450,000
	전체(실내기 4대)	거실/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5,900,000
64	기본(실내기 2대)	거실/주방 + 침실1	3,450,000
	전체(실내기 4대)	거실/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5,900,000
84	기본(실내기 2대)	거실/주방 + 침실1	3,700,000
	전체(실내기 5대)	거실/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알파룸	7,500,000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이하 시스템에어컨 옵션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상기 주택형별 시스템에어컨 공사비 산정 시, 주택형별 면적에 따른 실외기 용량 차이로 인해 금액 차이가 발생함

◆ 실외기실은 건축계획 내용에 따라 외부선반 거치형(50/59/84), 실외기공간 설치형(31/64), 외부 테라스 공간(116/150) 설치형으로 구분되어짐 ◆ 시스템에어컨 공사비부가세포함는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따른 기본 설치품목인 에어컨냉매 매립배관 및 해당 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으며, 미설치 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시스템에어컨은 확장시에만 옵션선택이 가능하며 실내기의 설치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내 조건에 따라 설치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시장상황 등의 변화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옵션선택 시 기 선정된 시스템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 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 안방 총 2개소의 냉매배관 및 해당 콘센트가 시공됨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됨

③ 현관 중문 [발코니확장 시 선택 가능]

(단위 : 원, VAT포함)

품목	주택형	위치	구분	금액	비고
현관 중문 (50주택형 제외)	31	현관	3연동 슬라이딩형	1,450,000	설치위치, 디자인 및 마감재 변경 불가하며, 중문설치로 인해 현관 깊이가 축소됨
	64		양개 여닫이형(250mm+850mm)	1,700,000	
	59/84		3연동 슬라이딩형	1,550,000	

◆ 계약자가 임의로 시공 위치 지정 및 디자인 변경이 불가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50주택형은 평면구조상 중문설치가 불가하여 제외됨

◆ 현관중문은 장식성도어로 차음 및 단열을 위한 기능성도어가 아니며, 향후 입찰 결과에 따라 창호사양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음 ◆ 현관중문 디자인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하는 품목으로써 계약시 디자인, 제품사양, 설치 등에 대해 교체 및

3.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등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음

4. 본건 공급대상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분양계약체결일 이후 내장 및 외장 재료의 수급 여건, 현장 시공 여건, 입주자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수분양자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건축법,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상 사업시행인가권자의 인가 · 통보 등 절차를 거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기능적 · 객관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수분양자는 위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신탁해지, 신탁목적 달성 등의 사유로 위탁자 겸 사업시행자 세림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수탁자 겸 사업대행자 대한토지신탁㈜가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 · 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위탁자 겸 사업시행자인 세림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게 면책적 · 포괄적으로 이전됨

6. 개별 분양세대에 대하여는 매수인에게로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수탁자의 모든 권리 · 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위탁자 겸 사업시행자인 세림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게 면책적 · 포괄적으로 이전됨

■ 사업관계자

구 분	상 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비 고
사업시행자(위탁자)	세림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254271-0006215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52,44, 506호(등촌동, 청림오피스텔)	
시공사	두산중공업㈜	194211-000094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산볼보로 22 (귀곡동)	
시공사	한강건설㈜	134111-0200050	경기도 과천시 새술막길 36, 602 (중앙동)	
사업대행자(수탁자)	대한토지신탁㈜	110111-1492513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517, 26층(삼성동, 아셈타워)	

■ 견본주택 사이버모델하우스 : http://www.deungchon-weve.com/

■ 견본주택 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534-5번지

■ 분양문의 : ☎ 1811-0078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건축법,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등 관련 법령에 의함.

[총 217세대 | 일반분양 156세대]

31㎡, 50㎡, 59㎡, 64㎡, 84㎡ Type

시행 세림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시공 DOOSAN 두산중공업 漢江建設株式會社 사업대행 대한토지신탁(주)

문의전화 1811-0078